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3. 10 -----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8. 03. 13

다. 상 정 일 자 : 2008. 03. 20 (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건축과장 오홍택)

가. 임대주택 안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관리비, 하자보수 및 분양가격의 전환 등에 대하여

나.「임대주택법」제18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·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중재의 근거를 마련코자함

3. 관련법령

「임대주택법」제18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등

4. 주요골자

가. 조정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나.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분쟁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❑ **본 조례 제정 건은**

○ 임대주택 관련 쌍방 당사자간의 이해조정과 분쟁을 적기에 처결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일조한다고 생각되며

○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에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 기본욕구에 부응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고

○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중구, 동구, 북구, 광주광역시 서구, 남구와 성남시, 광양시 등 전국 41개 시·군·구에서 기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여타 시·군·구에서도 입법예고 등 준비 중에 있으며

○ 특히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,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❑ **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**

6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7. 토 론 요 지 : 없 음

8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